

「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년 9월 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2년 9월 15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7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교육체육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교부금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 학교와 사업범위를 재정비하고,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유치원이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대상학교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로 명시(안 제1조)

-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 규정인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정비(안 제2조제1호 ~ 제6호, 제9호)
-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분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(안 제2조제7호)
-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조제8호)
-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1항)
  - 교육경비업무 주관 국의 국장(행정지원국장)을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- 본 조례안은  
교육경비 보조 대상 학교와 사업범위 및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,  
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비를  
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,  
안 제1조에서  
보조 대상 학교를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 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로 명시하고,

안 제2조제1호 ~ 제6호, 제8호 ~ 제9호에서

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 규정에 따라 정비하였으며,

안 제2조제7호를 통해

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 
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「교육기본법」 제9조제1항에 의거, 학교임에도 불구하고

지원되지 못하였던 유치원을 교육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,

보조사업 범위 및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,

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

마련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등

평창군의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, 효율적인 교육 행정을 추진하고자

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5. 토론요지: 없음**

**6. 심사결과: 원안의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**

붙임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